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이인호



완도군 조례 제2935호

붙임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3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 17만원, 24회 9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23회 매월 17만원, 24회 9만원)”을 “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35회 매월 22만원, 36회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조 중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달부터 출산장려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제5조의3(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① 제5조의 부합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
1. 첫째아 : <u>100만원</u>	1. ----- <u>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 17만원, 24회 9만원)</u>
2. 둘째아 : <u>500만원</u>	2. ----- <u>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35회 매월 22만원, 36회 30만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여섯째아 이상 : 다섯째아 일시금 지급액 500만원에 각 100만원을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분할 지급액은 다섯째아 지급 기준으로 한다	6. -----
7.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달부터 출산	<삭 제> ----- 할

장려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신 설>

②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에는 전출한 달부터 출산장려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36호

붙임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1부.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완도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

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

로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

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8.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9.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37호

붙임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37호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4조(「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을 각각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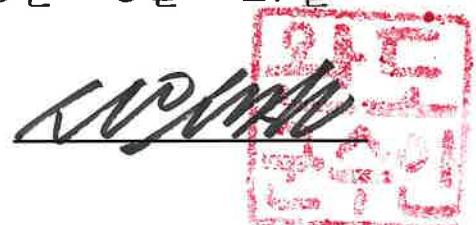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38호

붙임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38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접근성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사업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

성과 접근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39호

붙임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39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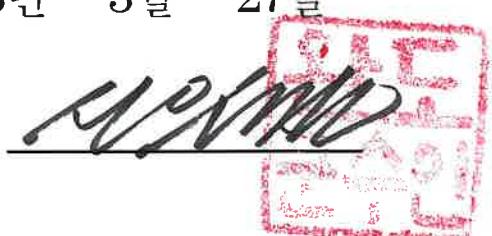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40호

붙임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40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감독공무원 · 하자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의2 (공사설명제) 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독공무원·하자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p>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41호

붙임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41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과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4. 웰니스 관광 인프라·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9. 웰니스 관광 컨설팅 ·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완도군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시설 운영, 상품판매 등과 관련한 시설개선 경비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웰니스 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 팀장이 된다.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관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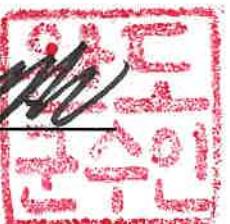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23. 3. 22.)에서 의결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42호

붙임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4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것(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등 농업관련 시설 신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② ~ ⑤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
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
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 ⑤ (현행과 같음)